

# Samil Flash

## 중국의 이전가격 동향 및 시사점

### I. 新 법인세법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

중국의 新 법인세법 (200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 제 6장 “특별납세조정”은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과 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7년 5월 10일 자 Samil Flash, 별첨 3. 중국 新 법인세법의 이전가격에 대한 시사점 참조).

- **원가분담약정의 도입:** 기존 다국적 기업들은 관련 비용 부담의 중국 내 공제 불허 등의 이유로 중국 내 자회사와 해외 관계사간의 무형자산 및 서비스의 공유에 소극적이었으나, 新 법인세법에서 원가분담약정 관련 규정이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됨.
-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특별 이자 징수:** 기존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특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新 법인세법에서 이전가격 조정에 대해 특별 이자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한 규정 강화:** 독립기업원칙에 기초하지 않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의 과세조정 권한이 강화됨.
- **이전가격 사전승인의 활성화:** 新 법인세법에서 이전가격 사전승인 (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이는 APA 활성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됨.
-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新 법인세법에 따라 외투기업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제출 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기존 제출 자료 (Form A 또는 Form B)가 비교적 기본적인 자료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新 법인세법에서는 현저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인 제출 자료의 범위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며, 올해 가을 경 발표될 예정임.

### II. 최근 이전가격 동향

-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담당 세무공무원 교육**
  - 2007년 5월, 2주간 이전가격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모여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음.
  - 무형자산 거래 (로열티 거래)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견해는 만약 어떤 기업이 계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익률을 기록할 경우 로열티 지급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 즉,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의미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가치가 창출되지 않으면 비용을 지급할 이유도 없다는 견해임.
- **이전가격 조사의 강화 추세:** 이전가격 담당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짐. 금번 新 법인세법의 이전가격 관련 조항 등 여러 가지 관련 규정들이 정비되면서 향후 이전가격 조사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판단

-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등 각종 규정 정비 예상:** 법인세법 시행 세칙 및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은 현재 작업 중에 있으며, 올 가을 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III. 이전가격 세무조사 추세

- **주요 조사 사유**
  - 지속적인 손실
  - 제조업 및 수출업에 대한 조세감면 (2년 면세, 3년 감세, 2免 3減) 이후 급격한 이익률의 하락
  - 특수관계자 거래와 비특수관계자 거래 간 가격의 명백한 차이
  - 지속적으로 낮은 이익률
- 세무당국은 로열티, 서비스 거래, 용자 거래 등을 포함해 점점 정교하고, 복잡한 유형의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음
- 세무당국은 제조업에 대해서도 점점 공격적인 경향이 되어가고 있음
  -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손실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음 (조사 대상 중 설립 후 2~3년간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과거에 비해 이전가격 조정 시 더 높은 이익률이 적용되고 있음
  - 전체 그룹이 손실 상태에 있더라도 단순 제조업을 하는 자회사 등의 경우 시장위험 등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세무당국은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동일 지역 내 동종 업종에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선행 조사 사례는 조사 대응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음
- 국가세무총국의 지도에 따라, 市 수준의 세무당국은 조사 건을 종결시킬 때 다른 지역의 유사한 조사 사례를 참고하고 있음
- 세무당국은 상당히 전문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전가격 조사 시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Documentation을 요구하는 편임
- 올해의 경우 자동차 관련 산업과 의약품 산업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IV.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대비책

新 법인세법의 제 6장 “특별납세조정”에 반영된 조항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외투기업들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한 잠재적 조세회피에 대한 조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관련 규정의 강화 및 세분화 이외에도,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특별 이자 징수로 인한 가산세의 증가는 외투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며, 따라서 이전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성이 증대.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이 요구됨.

- 현 상황에서 이전가격 문서화는 중국 내 이전가격 관련 위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임.

- 보다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 자회사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독립기업원칙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함.
- 관련 법규 발표 등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APA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전가격 관련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APA 신청의 적극 고려 필요.

이전가격과 관련한 신 법인세법의 중국 내 기업에 대한 영향 및 파급 효과 등은 시행 세칙 발표 후에 보다 명확해 질 것이므로 이를 예의 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중국이전가격 세미나가 8월 말, 서울에서 삼일회계법인 주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 세미나에는 당 법인 이전가격파트너와, PwC China의 이전가격담당 파트너, 중국 과세 당국자 및 한국 국세청담당자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중국이전가격 세미나 안내장은 추후 별도로 발송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07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